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월  
석사학위논문

대학생활협동조합 회계처리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조진영

# 대학생활협동조합 회계처리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Treatment of the  
University Cooperative

2016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조진영

# 대학생활협동조합 회계처리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조 승 제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조 진 영

# 조진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길영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승용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승제 (인)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1
1. 사회적 배경 .....	1
2. 대학사회의 배경 .....	4
제2절 협동조합의 의의 .....	7
1. 협동조합의 정의와 접근 각도 .....	7
2. 운영의 측면에서 본 협동조합 .....	8
3. 소유의 측면에서 본 협동조합 .....	10
4. 전체 시장경제 체제의 협동조합 .....	12
제3절 연구의 목적 .....	14
제4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16
제2장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이론적 배경 .....	18
제1절 사회적 경제의 발전 .....	18
제2절 사회적 경제의 개념 .....	19
제3절 외국의 생활협동조합 .....	21
제4절 선행연구 .....	26
제3장 대학생협동조합의 현황 .....	30
제1절 대학복지와 대학생협동조합 .....	31
제2절 협동조합의 관련 법규 .....	32
제3절 협동조합의 관련 회계규정 .....	33

제4절 연구모형 .....	34
제5절 표본 및 통계 값 .....	36
<b>제4장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회계처리 현황 및 문제점 .....</b>	<b>39</b>
제1절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채택의 문제 .....	39
제2절 결산보고서 및 계정과목의 명칭 통일성 결여 .....	40
제3절 출자금의 특성 .....	44
제4절 임대수입금의 회계처리 문제 .....	44
제5절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문제 .....	45
제6절 감사 선임의 문제 .....	47
제7절 대학발전기부금의 납입문제 .....	48
<b>제5장 결론 및 한계점 .....</b>	<b>49</b>
참고문헌 .....	52

## 표 목 차

<표 2-1> 대학생협 의 연대별 설립특징 .....	27
<표 2-2> 전통적 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비교 .....	29
<표 3-1> 협동조합의 관련법규 .....	32
<표 3-2> 비영리법인의 회계규칙 .....	34
<표 3-3> 한국의 대학생협동조합 .....	36
<표 3-4> 기술통계량 .....	37
<표 3-5> 재무자료 평균치 .....	37



## 그림목차

<그림 1-1> 비영리법인의 구분 .....	16
<그림 2-1> 대학생협의 시기별 구분 .....	26
<그림 2-2> 경제 시스템의 기본모델 .....	28
<그림 3-1> 대학생활협동조합 분포도 .....	30
<그림 3-2> 대학 복지의 문제 영역 설정 .....	32
<그림 3-3> 연구모형 .....	35
<그림 4-1> 미지급 출자금을 유동부채로 처리한 경우 .....	40
<그림 4-2> 회계보고서 표제 예1 .....	41
<그림 4-3> 회계보고서 표제 예2 .....	42
<그림 4-4> 회계보고서 표제 예3 .....	42
<그림 4-5> 손익계산서 구성내용 예1 .....	43
<그림 4-6> 손익계산서 구성내용 예2 .....	43
<그림 4-7> 자본금 구성 .....	44
<그림 4-8> 수입임대료 .....	45
<그림 4-9> 판매장려금 .....	46

## ABSTRACT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Treatment of the University Cooperative

Jo, Gin-Young

Advisor : Prof. Jo, Seung-Je,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ince 1989 the history of Korea University Cooperatives has been started, the number of Korea University Cooperatives has been steadily grown to 33. The principal body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niversity cooperative is consisted of professors, staffs, and students. Operating convenient fringe facility in university is a kind of obligation of university authority for the benefit of all members of university. This area of obligation is delegated to the university cooperative. So the university is assumed to give full support to the university cooperative which is operating under the delegation of the university authority.

The university cooperative, nonprofit organization, is making a profit by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to the members of as a method to have a financial resources for the university members' fringe benefit. The realized profit is returned to the university through various ways such as giving scholarship to the students, restructuring facilities, providing useful programmes for the members, and donating to the university. This system may be a good support to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Korea University Cooperative Foundation is established to be a bridge

gate among each university cooperatives in 2011. And 2014 it became a member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Asia Pacific(ICA-AP) to process international activities with other country's cooperatives.

Regardless of theoretical development of the cooperatives, there is no standard on the accounting treatment of university cooperative. The lack of accounting standards on the university cooperative makes difficult for the comparing of operating results of each university cooperatives. There are frequent conflicts between university cooperative and tax authority because of lack of accounting standards.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for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cooperatives

First, full recognition on the accrual basis must be accepted. Some university cooperative are using cash basis in accounting treatment such as accrued interest revenue, unpaid on the capital investment.

Second, the accounting terms need to be unified according to the related law. The Consumer Cooperative Law provides several different terms to use Report on Final Account, Balance Sheet, Report on Profit and Loss instead of Financial Statements,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and Income Statement.

Third, the capital investment is treated as a capital. But the cooperative articles allow to return the capital investment when the members withdraw. This characteristics of return on the capital investment is main content of liability. The capitalizing the member's investment must be supported under appropriate accounting theory.

Fourth, to compromise the conflict between cooperative and tax authority, the fundamental spirits of university cooperatives must be spread to the all interested parties.

Fifth, charging tax on the sales promotion commission must be withdrawn.

Sixth, university cooperatives must subject to the related rules. If needed, appropriate revision must be suggested.

Seventh, scholarship or contribution from retained earnings need to be

treated as a current expenses. This research may be useful in understanding Korea University Cooperatives status and in making unified standards of accounting treatment for the university cooperative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사회적 배경

최근 한국사회에서 대두되는 경제체제와 관련된 이슈의 하나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2012년 이후 협동조합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8,000개에 가까운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국회 발의를 두고도 최근 이슈화되어 찬·반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듯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경제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여야 구분 없이 하나 같이 사회적 경제를 지속가능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으로 가기 위한 대안으로 꼽았고 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2014년 여야의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143명의 서명으로 의원법안으로 발의되었던 것이다.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최근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법안이 경제적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이념과 정쟁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국회에 상정 조차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경제과가 신설되고 있고, 행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정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칼 플라니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란 인간의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를 말한다. 신명호는 ‘사회적 경제 개념의 출발점으로 무한경쟁의 시장자본주의에 반대하고, 그것의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sup>1)</sup>’라고 하였고,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 기업과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등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일컫는다.

1)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호, 2008. p. 39.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게 된 것은 IMF로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국가와 기업의 복지와 취업정책 실패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해오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의 외국사례에 주목하게 되어,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정부 정책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이에 소비, 의료, 통신, 유통, 예술, 제조, 서비스 등 각종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복지와 일자리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경제조직들의 구성이 활발해지고 있다.<sup>2)</sup>

19세기 초 로버트 오웬은 자본제 생산양식을 움직이는 이윤이라는 동기를 문제로 삼고 그러한 동기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회에 대하여, 사람들의 자발적인 서로 도움을 동기로 하는 협동사회를 상정하고 이상으로 하였던 것이다.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그것을 다른 공장에도 파급시키려고 공장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협동의 생각에 토대를 둔 일종의 소비조합을 만들고자 하면서, 생산도 소비도 협동으로 행하는 이상적인 협동사회를 목적으로 뉴 하모니 촌을 만든다든지, 착취 없는 사회를 목적으로 각자의 노동시간에 따라서 물자의 구입이 가능한 노동화폐를 발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로버트 오웬의 다양한 시도들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협동조합 운동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로버트 오웬은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고 있다.<sup>3)</sup>

협동조합은 1920년대 영국 로치데일 공장 노동자 28명에서 시작하여 105개국 8억 여 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비정부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제도에서 자발적 조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한데 모아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경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은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한 후에 2012년 UN 총회에서의 결의는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 여성, 젊은 청년, 고령자, 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경제 사회 개발에 최대한 참가를 촉구하고 있는 것, 동시에 원주민이 경제 사회개발의 주된 요소로 되고 있으므로 빈곤의 근절에 기여하는 것이

2) 이미옥, 『대학생협 설립 유형에 따른 사회적 경제 운영 효과 분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 4.  
 3) 권영근 옮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안동농업협동조합 2012), p. 36.

라는 것을 인식하고 .... 다양한 경제부분에서 생계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고, 신흥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창설을 지원하기 위한 가일층의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UN 사무총장의 보고서의 권고에 대한 가맹국의 주의를 환기” 하고 있으며 이 같은 UN의 결의는 사회개발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특히 UN 밀레니엄 개발목표에 대한 협동조합의 노력에 강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이 UN에서 국제협동조합의 해를 결의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한 문서에서도 협동조합은 각국의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2009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 속에서도 투자자 소유 금융기관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며 예금자와 조합원의 신뢰와 신용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신흥은 96개국, 4만9000 신흥에서 1억 7700만 명이 금융서비스를 받는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금융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원이 차지하는 인구구성비율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핀란드와 싱가포르의 경우 2명중 1명, 캐나다, 뉴질랜드, 온두라스, 노르웨이의 경우는 3명중 1명, 미국, 말레이시아, 독일의 경우 4명 중 1명이 협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GDP에 기여하는 비율도 케냐는 45%, 뉴질랜드는 22%에 달하며, 전세계적으로 협동조합에 속한 직원도 1억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sup>5)</sup> 이와 같이 협동조합은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협동조합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잠재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① 압축성장에 따른 급속한 농촌 해체와 사회변동 ② 식민지 잔재이기도 한 관제협동조합의 전통 ③ 국가 주도형 생산자협동조합·금융협동조합 진흥·규제정책으로 인한 협동조합 약체 ④ 뒤늦은 제도 정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 ⑤ 대기업집단 지배형 시장구조 등이라 하겠다.<sup>6)</sup> 일반적으로 소비자생활협이 발휘하는 공공 기능은, 영리기업의 경쟁체제에 대한 길항력(拮抗力)을 작용하는 것이다. 파행적인 농산물가격이 소비자를 불안케 할 때 생협의 농산물, 식품의 가격 지수는 영리기업에게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실제로 2009년 유럽의 신용위기로소비재 가격이 오르게 되자 환차익을 환수하여 소비자 가격을 내리거

4) 상계서, p.197.

5) <http://www.un.org/esa/socdev/social/cooperatives/documents/survey/background.pdf> pp. 2-3.

6) 김형미·김태훈, “차별의 시정과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제도개선과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2015. 4. 6. p. 7.

나(스위스 생협), 소비재 가격을 저가격으로 유지하여(이탈리아 생협), 소비자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사업 활동을 견지했다. 또한 일본의 생협은 지자체와 ‘재해 시 긴급지원 물자 공급 협약’ 을 맺어 지진, 호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긴급물자를 실어 이재민에게 제공하고 평소 생협의 가정공급망을 통해서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는 준공공적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7)</sup>

ICA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협동조합(cooperative)의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다.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 controlled enterprise.<sup>8)</sup>

이와 같이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의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구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협동조합 운동이다. 상부상조하는 협동조합의 정신은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활동의 개념으로 파악된다.

## 2. 대학사회의 배경<sup>9)</sup>

19세기 독일 철학자 빌헬름 폰 훔볼트는 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공동체” 라고 정의했다. 순수 학문의 열기와 사회에 대한 비판이 가능했던 공간, 자유롭게 삶과 세상을 상상하고 꿈꿀 수 있었던 공간이 대학이었다. 하지만, 지성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필요한 인문학은 소멸되어 가고, 대학을 소유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취업을 위한 학부로 재편되며, 캐나다, 스페인, 영국 등 세계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과 복지서비스의 후퇴에 대항하고 있다.

1995년 5.31 이후 김영삼 정부는 대학설립과 정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학 자율화’ 정책을 시행했다. 대학 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으로 대학 내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민간기업 유치가 허용됨으로써, 민자유치 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의 대학 내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8년 2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통과됨으로써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7) 상계논문, p. 10.

8) <http://ica.coop/en/whats-co-op/co-operative-identity-values-principle>

9) 이미옥, 전개논문, p. 5.



하고 ‘학교기업 사업금지’ 업종을 102개에서 19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유흥, 도박, 마사지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터주었다.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등록금은 가게를 위협하고 있고, 대학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들어선 상업시설과 프랜차이즈 상점들과 민간자본투자방식으로 설립되어져 시설과 외형은 훌륭하지만 비싼 기숙사비, 대학사회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며 기업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대학의 재정이 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으면서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현상에서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한 대학집행부의 정책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을 직접 소유하여 본격적으로 영리활동을 벌인다면 대학의 상업화가 매우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안민석, 2008)고 이미 경고된 바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로 나타났다. 대학 수익창출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시킨 수익형 민자사업(BT0)으로 부산대가 추진했던 쇼핑몰 효원굿플러스 사업은 분양조차 저조했고 부산대는 800억 원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sup>10)</sup>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고등교육은 빠른 속도로 팽창해 왔다. IMD(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으로 국가경쟁력에 관한 각종 지표를 발표하는 기구)의 지표에서 세계 60개국 중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지표는 31위를 보여주고 있다. 1965년 10만5천6백43명이던 대학생 수가 2014년에는 290만 명이 넘었다.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2014년 70.9%로 OECD의 평균인 58%보다 13%나 높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1년도 GDP대비 공교육비의 구성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부담의 비중은 0.7%에 불과하여 OECD의 평균 정부부담 비중인 1.1%와 비교하면 OECD의 평균치의 64%에 불과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sup>11)</sup>

대학사회는 장차 사회를 이끌어갈 사회의 새싹들이 학습과 경험을 쌓는 곳이다. 대학 4년은 짧지만, 살아가는 내내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가치관과 선택의 기준이 형성되는 소중한 기간이다. 또한 교원과 직원들은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에도 소속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협동의 경험이 대학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10) 연합뉴스, 2013. 4. 2.

11) <http://www.moe.go.kr/> 및 <http://kess.kedi.re.kr/index> 통계자료 편집

있고, 대학에서의 경험이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사회에서 사람과 협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의 실현은 대학 본연의 역할에 대한 성찰의 계기이자, 대학사회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대학 내에서 대학구성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체제인 협동조합에 대한 긍정적사고의 확산이 필요하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은 ‘대학 내 교원·직원·학생 등 대학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위해 대학 안에 설립한 생활협동조합의 하나’이며, 이를 줄여서 ‘대생협’이라고 한다. 1989년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건설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한국의 대학생활협동조합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2015년 10월 현재 33개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운영과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지게 됨으로써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들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 적정한 가격설정, 다른 대학생활협동조합들과 공동구매를 통해 필요한 물품들의 저렴한 공급, 대학 내에서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협동과 나눔을 학습하고 조합원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안과 실현을 통한 실천적인 학습의 기회, 조합원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관계형성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애정의 고취,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의사결정구조에 함께 참여하고 문화체험행사를 함께 함으로써 새로운 신뢰를 만들어가는 등 협동조합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장점들을 가져오게 되었다.

드푸르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작동원리를 4가지로 정리하였다. 1) 이윤보다는 구성원을 위한 목적, 2) 운영의 독립성, 3)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4)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윤분배가 그것이다. 대학후생복지 서비스는 주로 학교에서 직영하거나 외부기업에 임대를 주어 운영하거나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드푸르니가 이야기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작동원리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1)자신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설립, (2) 학교와 별도의 독립적 주체로 운영되고 있는 점, (3) 교수·직원·학생의 3 단위가 참여하여 상호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민주적 절차, (4) 학생들의 근로참가, 장학금 지급 및 이용고배당의 형태로 운영되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특성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부터 한국의 대학생활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대학

생활협동조합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원·직원·학생들의 자주적인 운영과 독립적 기구로서의 자치기능을 통하여 구성원 간의 협동정신과 나눔의 행동을 확산시키는 조직으로 대학생활의 후생복지기구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제2절 협동조합의 의의<sup>12)</sup>

협동조합이 범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조직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협동조합은 18세기 이래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 발전사와 사회주의 흥망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 지탱해 왔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적인 약자들에 의한, 약자들을 위한 단체로 존재해 왔으며,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는 국가적 소유의 국가적 경영으로 이행하는 과도적 기수, 국가의 지배를 원활하게 하는 행정 기구로 존재해 왔다.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합쳐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협동조합 기구들을 묶는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ICA)은 1895년 설립된 이후 71개국 164개 협동조합 전국 조직과 8개 협동조합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단위 조합 수는 모두 74만개가 된다. 조합원 수는 어림잡아 약 5억 명을 헤아리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총인구 7억 가운데 1억5천만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광범하게 존재하는 협동조합이 단일한 성격이나 형태를 갖는 것은 아니나, 종류는 매우 복잡할 정도로 많으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서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 1. 협동조합의 정의와 접근 각도

협동조합을 한마디로 선뜻 정의하기는 어렵다. 매우 다양한 측면과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주관과 의지가 개입될 여지 또한 다분히 있다.

협동조합을 보는 관점에는 대략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체제 내에 사는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

12) 김성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대학생협의 이해』(대학생활협동조합본부 2000), pp. 1-8.

지위 향상과 발전을 목표로 조직한 경제 단체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 자본주의적 사기업 공기업과 다른 ‘독특한’ 기업체가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전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한 부분이 된다.

둘째,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상품 시장의 성격을 지양하기 위한 개혁 및 개량의 수단 내지 세포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비록 경제적인 방식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목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변혁을 위해 모인 동지가 된다. 협동조합은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

셋째, 이들과는 처지와 조건이 조금 다른 경우에서 나오는 관점인데 협동조합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수단 내지 계급투쟁의 무기로 보는 관점이다. 이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정당의 외국부대, 지원부대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인 경우 사회주의 정당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의 행정기구로 된다.

이러한 견해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 사회변혁 내지 사회발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일정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며 서로 다른 관점에서 협동조합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어떻게 의미가 부여되느냐에 관계없이 자신의 공통된 ‘정체성’을 갖는다. 이러한 공통된 정체성은 주로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에서 발견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자본주의 진영 옹호론자이든 수정자본주의자이든 아니면 사회주의자이든 할 것 없이 협동조합에 관한 ICA가 정한 협동조합의 운영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 2. 운영의 측면에서 본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은 1840년대부터 존재해온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에 준하여 운영되어왔으며 세계협동조합연맹(ICA)에서 1995년 수정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sup>13)</sup>

###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협동조합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성별, 사회, 인종, 정치,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

13) <http://univcoop.or.kr/intro/principle>

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는 성, 인종, 종교, 정파, 사회적 신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1인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원칙이다.

####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 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며 잉여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배분한다.

-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2)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3)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출자금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당은 최소화하며 잉여금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적립금,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이용고배당,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에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 4)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협동조합의 참된 정신을 확산시킨다는 원칙이다.

#### 6) 협동조합 간의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협동조합은 지역, 전국,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는 원칙이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기반으로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같은 운영원칙은 1937년 이래 1966년과 1995년에 수정을 거쳐 오면서 기본적으로 지속되어온 ICA 가입 조건이었다. 이 원칙 안에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성격이 모두 녹아 있다고 생각된다.

생활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원칙들을 조합원 모두가 이해하고 그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협직원들의 이러한 운영원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생협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 생협운동의 이상을 근거로 해서 그 뜻을 계속 유지하며 생협운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식을 실천을 통해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생협운동의 이상실현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면 직원의 의식에는 과중한 노동과 장시간 근무라는 현실적인 모순만이 남는다.<sup>14)</sup>

### 3. 소유의 측면에서 본 협동조합

조합원 중심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의 운영은 협동조합이 일개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아니면 국가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합원 자신들에 의해 소유된다는 점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모든 경제 단체들의 운영원칙이나 방식은 그 경제 단체의 소유권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적인 주식회사는 주주들(대주주가 주도하겠지만)에 의해 그 운영 방식이 결정되며 국영 기업은 국가에 의해 운영과 통제가 결정된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거기에 참여한 조합원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됨으로써 조합원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소유의 측면, 소유의 관계는 주로 생산 수단이나 자본이 누구에게 어떠한 것으로 소유되어 있느냐를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본가와 임금노동자로 양분되며 이원화된다.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집단적 소유 내지 협동조합적 소유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적

14) 이문창·박흥석 옮김, 『소비자를 위한 생활협동』 (에이레네 1992), p. 180.

소유 내지 전인민적 소유이다. 사외주의 정치경제학에 의하면, 이중 협동조합적 소유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소유형태로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적 소유내지 전인민적 소유로 넘어가야 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먼 옛날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통틀어 이 세계에는 크게 볼 때 생산수단에 대한 세 가지의 소유 관계, 소유 형태가 존재하였다.

첫째, 사적 소유이다. 사적 소유는 고대 사회 이래 계속 존재해 온 소유 형태로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다. 둘째, 국가적 소유이다. 국가적 소유는 사회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소유 형태인데 주로 국영 농장 국영 기업, 국영 상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셋째, 집단적 소유 내지 협동적 소유이다. 협동조합적 소유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도, 사회주의 체제 내에도 존재하는데 생산 수단을 직접 활용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소유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협동조합, 사회주의 체제의 협동 농장, 소비조합, 협동조합기업소, 자주관리기업 등이 모두 광의의 협동조합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노동 소외를 가중시켜 오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화가 상당 정도 진척된 방식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언제나 대주주에 의한 독점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이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적 국가의 경우 ‘증권 시장’으로 사회화된 주식은 주로 대규모 금융자본에 흡수된다. 최근 대두되었던 종업원지주제 또한 근본적으로 종업원들이 51% 이상의 주식을 평등하게 분배받지 못하는 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폐단을 여전히 유지하게 된다. 독일 과 같이 노동자들을 소유권과 관계없이 50%의 비율로 경영에 참가시킨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 힘들다. 경영권은 언제나 소유자에 의해 장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국가 소유는 비효율과 노동 소외라는 점에서 이미 상당 정도 호소력을 잃어버렸다. 국영 기업의 노동자들은 열심히 노동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효율적인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초기 소련의 붕괴 이후에는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기본적으로 국영 기업의 주식회사화 내지 협동기업화의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의 주식회사도 서구의 주식회사와 달리 종업원 지주제의 성격

을 강하게 띠거나 아니면 자주관리 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시대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의 부정의함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국가 소유의 비효율성, 경직성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안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구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하나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를 끊임없이 사회화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협동조합적 소유 관계의 확대 발전이다.

협동조합적 소유는 생산 수단에 대한 지배적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에서 민주주의의 강력한 근거를 마련한다. 만일 협동조합 기업이 자본주의 사기업이 수백 년 동안 쌓아 온 경영과 마케팅의 노하우를 흡수하여 세련화 시킬 수만 있다면 협동조합적 소유는 시장경제(자본주의적 시장이든 사회주의적 시장이든) 내에서 자본주의 사기업이나 주식회사보다 훨씬 효율적인 경제 단체로 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노동 과정이야말로 가장 첨단 경영 방식에 접합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새로운 경영 기법들은 기존의 상하 구조적이고 딱딱한 명령 전달 체계에서 벗어나 노동자, 종업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이용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협동조합이 전체 경제 체제 내지 전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느냐 하는 점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 4. 전체 시장경제 체제의 협동조합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몰락이후, 세계는 단일한 시장 경제권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경제의 세계화, 시장의 세계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이 세계 시장 내에서는 이미 치열한 경쟁과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생산과 판매, 유통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 경제의 국제화는 이미 대세로 정착되었다.

단위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협동조합의 연합 기구든 그것은 일단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남아야만 자신의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협동조합은 이제 개방된 세계 경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적인 협동조합 기업이나 협동 농장 등도 기존의 계획경제체제에서 벗어나 마찬가지로 과정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때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기업들과 생존을 위한 경쟁, 발전을 위한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일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사기



업이나 주식회사와의 경쟁에서 자신의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협동조합은 한 사회 내에서 보다 일반적인 경제모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시장경제내의 효율 경제에서 패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적 국영 기업이나 국영 농장, 국영 상점과 마찬가지로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독점 체제로 편재되어 있다. 독점은 끊임없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해 독점이윤의 실현을 기반으로 성립된 것이데, 협동조합이 이러한 독점 대기업과 시장경제 내에서 대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간의 협동과 연대가 필수이다. 이것이 바로 1966년 ICA 협동조합 원칙에 협동조합 간 협동의 원칙이 첨가된 이유이다. 협동조합은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자본주의적 독점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상호간의 연대와 협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만일 한 사회의 체제가 부정의하고 부도덕한 권력에 의해 움직여 협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제도적으로 부정하거나 아니면 권력이 노골적으로 독점 대기업의 편에 서서 협동조합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진로와 정치투쟁의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혹은 독재 정권 치하가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의 발전에 보다 유리한 제도적 장치와 정치적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치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협동조합은 자신의 진로에 유리한 정책을 제시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과 정치적인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다. 1937년 ICA의 협동조합 원칙에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의 원칙’이 있었는데, 1966년 개정 때 이 원칙은 삭제되어 협동조합이 어떠한 정치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사기업들과 경쟁하여 살아남고 새로운 생산 관계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협조의 측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전체를 협동조합의 이념에 맞는 사회로 서서히 혹은 급격히 변화시키고자 하는 조합원의 의지가 모아질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협동조합은 자신의 협동조합 이념을 조합원들에게 언제나 주지시키고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익금의 일정액을 교육 분야에 투자해야만 한다. 이것이 ICA 7대 원칙 중 하나인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의 원칙’이다.

### 제3절 연구의 목적

협동조합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이 시행되어지고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되는 등 협동조합의 성장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사회적으로는 협동조합의 확산분위기에 비하여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성장은 정체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립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설립권장으로 2000년대에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성장 하는듯하였으나 대학사회에 불어 닳친 상업화로 인하여 대학 안의 협동조합인 대학생활협동조합은 내부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외부 기업이나 임대업자와 동일한 관점으로 보는 시각 속에서 경쟁의 압박과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다. 2014년도에는 세종대학교 대학생활협동조합이 문을 닫고 상지대학교 생활협동조합도 대학 재단의 혼란 속에서 대학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이화여대에서 외부기업을 유치하여 대학 내에서 영업활동을 한 외부업체들에 대한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에 대한 과세, 국립대학교의 시설물 사용료 징수방침, 비영리법인인 각 대학생활협동조합들의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시 장려금 분배에 대한 세무 논쟁 등은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도 있지만 회계처리 방법상의 문제에서도 야기된다. 본 연구의 출발은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생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지난 25년간 대학 내 구성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분야에서 학교조직을 대신한 역할을 하며 유지발전해올 수 있었다. 지난 25년간 한국에서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성장과정이 원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장 발전의 추세에 속해 있다. 하지만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설립 그 자체만으로 대학의 후생복지의 변화와 사회적 경제활동의 개념을 실현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IMF, 금융위기, 대학자율화정책으로 인한 대학상업화의 가속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위기는 대학생활협동조합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IMF 때에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나누고 아껴 쓰는 생활문화사업과 저렴한 생협 매장이 학생들의 어려워진 경제에 도움을 주기에 이용자가 더 증가하고 언론에 대학생활협동조합이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며 대학에 외

부기업 입점이 가시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은 큰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해왔으며,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과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계기로 급격한 양적성장도 이루었다. 합법적인 설립근거와 국가의 지원이 삽입된 법 개정은 국립대학교에서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5)</sup>

이렇게 조합수가 증가하면서 설립의 주요 목적과 설립 주체도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는 복지문제해결을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반영과 참여 보장, 그리고 운영과 수익처리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했고 주로 학생들이 생협을 설립하고자하는 주체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법에 근거한 합법적 복지시설운영으로 세금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대학에서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관련부처 교직원들이 설립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을 운동조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후생복지운영기구로 접근하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우리나라 대학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25년이 지난 지금 설립배경이나 유형과 관련된 조직이론에 대한 연구는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와 함께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생생활협동조합에 대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처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앤서니(Robert N. Anthony)교수는 소요자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재화나 용역의 판매를 통해 자원을 조달하는 조직체(기업형)
- 재화나 용역의 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자원을 조달하는 조직체(비기업형)

이를 그림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sup>16)</sup>

앤서니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은 I형, A type인 기업형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될 것이다. 초기에는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이 구성원들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었지만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 생활용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유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15) 이미옥, 전계논문, p. 10.

16) 배원기,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신영사 2013), p. 33.

**자원조달방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구분**

← 영리법인 →	← 비 영 리 법 인 →	
영리법인	I 형, A type (기업형 비영리법인)	II 형, B type (비기업형 비영리법인)
← 영리방식의 자원조달 →	← 비영리방식의 자원조달 →	

**<그림 1-1> 비영리법인의 구분**

후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현황을 파악하고 회계처리방식에 있어서 통일되지 못하고 상이하게 처리되는 부분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비교가능성과 회계처리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공정한 정보의 제공과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제4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설립 형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운영의 결과를 통해 대학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효과를 파악하고 각 대학생활협동조합에서 처리되어지고 있는 상이한 회계처리방식의 유형과 세무당국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을 통한 문제해결 방향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사회적 배경과 대학사회의 배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둘째, 협동조합의 근간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 개념과 함께 외국의 생활협동조합의 예를 살펴본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현황과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협동조합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법규와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넷째, 우리나라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회계처리 내용 중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본연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며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 제2장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이론적 배경

### 제1절 사회적 경제의 발전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원시적 협동조직체로 남아있는 계의 시작은 멀리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다양한 기능과 형태로 발전하여 상호부조방식에서 공공활동, 즉 각종 경제 금융 상호부조 종교 문화 오락 및 기타사업 등의 기능을 갖는 조직체로 분화되어 (1)공익을 위한 계 (2)생산을 위한 계 (3)상호부조를 위한 계 (4)금융에 관한 계 (5)사교 및 오락에 한 계 (6)제사 및 기타에 관한 계로 구분하여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곽창렬(1989)은 우리나라 소비자협동조합의 역사를 계와 향약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sup>17)</sup> 전근대적 봉건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동체적 성격의 것이었으며 근대협동조합이 성립하는데 요구되는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이들 계와 향약을 우리나라의 근대적 협동조합운동의 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근대적 봉건성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계와 달리 19세기 서구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농업경제에서 공업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발전되기 시작하여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견주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의 협동조합의 역사는 근대화과정에서 발생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우리국민들 스스로 협동하고 자립하고자 하는 다양한 계몽운동의 일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란 용어가 처음 탄생했을 때 핵심은, 자본가 개인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이익 추구를 가능케 하는 조직들을 하나의 부문으로 묶어 활성화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요, 정치적 비전의 제시였다. (신명호, 2008)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19세기의 고전적 정치·경제학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초기의 이념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중심적 믿음은 경제는 사회적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장원봉, 2006)

17) 곽창렬, 『소비자협동조합운동』(협동연구원 1989), pp. 175-179.

19세기 초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농업경제에서 공업경제로의 이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확대가족 단위와 길드에서의 노동으로부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인노동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불이익에 대한 집합적인 대응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등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시장에 기초한 경제의 등장과 함께 생산, 소비, 저축, 그리고 실업과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 관련한 노동자들의 집합적 이해의 방어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다.(Fontan & Sharffe, 2000: 4; 장원봉 2006)

## 제2절 사회적 경제의 개념<sup>18)</sup>

역사상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ics)란 용어를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은 1830년 프랑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샤를 뒤느와이에(Charles Dunoyer)라고 알려져 있으나, 샤를 지드(Charles Gide)의 용례가 오히려 현대적 의미에 가깝다고 신명호는 말한다. 그 이유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협동조합운동에 앞장섰던 그는 협동이야말로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이며 사적 이윤을 폐지하고 이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었다.(Westlund, 2003:164, 신명호, 2013 재인용) 그는 기독교 사회주의자로서 협동조합과 다양한 형태의 공제조직들과 같은 ‘사회적 경제’를 성장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문제, 특히 분배의 불평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신명호, 2013)

장원봉은 유럽의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 범주에서 개념이 정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1) 사회적 경제의 법적 조직 형태들에 대한 규정, (2)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목적에 대한 규정, (3)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운영원칙과 규범적 원리에 대한 규정, (4) 사회적 경제의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 (5)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법규의 규정이다.

첫째, 사회적 경제의 범위와 법적 조직형태에 대한 규정은 데로쉬(Desroches, 1984, Levesque & Ninacs, 2000: 112-129, 재인용)가 착안한 정의로써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조직들의 법적 지위에 기반을 둔다.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목적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협의의

---

18) 이미옥, 전개논문, pp. 16-18.

정의로 인용되고 있는 맥그리고 등(McGregor et al, 1997)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는 본질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집단들에게 대부분의 자원 지원과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small business) 혹은 서비스 영역”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운영원칙과 규범적 원리에 대한 규정은 비엔니(Vienney, 1994: Levesque & Ninacs, 2000: 112-129, 재인용)에 의해 발전된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업은 적어도 (1) 구성원과 관련 민주적인 작동, (2) 구성원들과 사업 간의 관계와 관련된 것들로 개인들에 의한 기업 활동의 규정, (3) 구성원들과 사업 간의 관계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이윤의 배분, (4) 사업과 관련된 것들로 재투자된 초과이윤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소유권 등 네 가지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규범적 정의로 드푸르니(Defourny, 1991: Levesque & Ninacs, 2000: 112-129, 재인용)에 의한 정의는 “사회적 경제는 연대, 자율성, 그리고 시민성 위에 마련된 경제적 시도들에 기초한 연합으로 구성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는 원리는 (1) 이윤의 축적보다는 구성원들 혹은 지역공동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적 목적, (2) 공공 프로그램과는 다른 자율적인 운영, (3) 민주적 의사결정, (4) 자본과 이윤의 분배보다는 사람과 노동의 우선 등이다.

넷째, 사회적 경제의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은 라빌(Laville, 1992: Levesque & Ninacs, 2000: 112-129, 재인용)에 의해 발전된 개념으로써, “사회적 경제는 (1) 그가 연대의 경제라고 부르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생성, (2) 그것의 경제적 활동의 형태, (3) 규정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안에서의 그것의 역할 등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조직들에 대한 지원 법규의 규정은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법 381/91 제1조항에 의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1) 사회, 보건, 교육 서비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2) 농업, 제조업, 상업 혹은 서비스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적 불이익자들의 고용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과 인간성의 증진에서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이해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장원봉, 2006)

유럽 사회적 경제의 당사자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유럽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Europe)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보다 우선한다.



- 구성원 자격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 (조직은)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 구성원 및 이용자의 이익, 기타 보편적 이익 등을 고루 안배한다.
- 연대와 책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구성원의 이익과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 제3절 외국의 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의 활발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각국의 생협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싱가포르<sup>19)</sup>

노동조합전국연합회인 싱가포르 노동총연맹(NTUC)이 1973년 페어프라이스(FairPrice) 생협을 설립하였다. 이 생협은 싱가포르의 소매업체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페어프라이스(Fair Price)의 총 매장 수는 163개이며 협동조합의 인식재고를 목표로 한 2020계획 속에 페어 프라이스를 협동조합으로서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온라인사업 확장,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재정적 안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단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점포를 개설하여 슈퍼마켓 형식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페어 프라이스의 조합원으로는 ①설립자(즉 NTUC) ②NTUC산하 노동조합 ③노동조합에 소속된 42,000명의 개인조합원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직장과 대학 등에도 생협이 있으며, 페어프라이스에서는 빵, 우유, 주스, 설탕과 식용유 같은 식품에 생협 자체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2014년도 총 매출액은 약 32억 싱가포르 달러(약 2조7천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 페어프라이스 재단을 설립하여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복지 및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지급 등의 협동조합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19) <http://www.fairprice.com.sg/>

## 중국

노동조합의 지도 아래, 1980년대 말부터 직장을 기반으로 한 직공소비합작사 결성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2만 명이 넘는 단위 생협이 설립되어 개인조합원 2천만 명, 연간 공급고 25억 위안(약 33억 7천만 원)을 넘고 있다. 그러나 지역차가 커서 텐진시와 산둥성은 발전하고 있지만 타 지역은 아직 취약하다.

## 인도

인도의 생협을 크게 분류하면 ①정부주도의 소비자 물자 유통수단으로서 정부의 인증으로 조직된 생협, ②공무원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조직된 직장 생협, ③사회운동가 독지가, 노동자, 빈민층의 복리를 위하여 조직된 생협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인도에는 밀가루, 설탕, 쌀 등 상품의 배급제도가 있으며 정부주도의 생협은 이 배급 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경영상황으로서, 직장 생협이나 복지 생협은 양호하지만, 정부주도의 생협은 충분한 이익이 확보되지 못한 적자 생협이 많다. 인도의 생협 조직은 단협과 도매생협(소매와 소매생협에 도매하는 생협), 주단위의 연합회 그리고 전국연합회로 조직돼있다.

인도의 생협은 부정한 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안정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의 배급제를 기본으로, 보조금을 받은 저소득계층에게 판매하는 밀, 쌀, 설탕, 등유 등도 취급하고 있다. 인도의 생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목표로 한다.

- 소비물자가 일반소비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 공정한 사업 활동을 추진한다.
- 소비자의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찾는다.
- 시장가격 안정에 영향력을 미친다.

인도 소매전체에서 생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3%이다. 생협전체 공급액 가운데 도시와 농촌의 비율은 거의 같다. 각 생협의 재무상태는 건전하지 못하다. 자기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전개를 하려고 외부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차입금의 이자가 높아 잉여가 있어도 이자를 갚느라고 사업을 활성화하지 못한다. 생협은 협동조합 사이의 협력 강화로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한다.<sup>20)</sup>

20) <http://cafe.daum.net/recyclebook/809c/52?q=%00CE%B5%B5%20BB%FD%C7%F9&re=1>

## 영국

2000년 4월 영국 최대의 생협 CWS는 2번째 규모의 생협 CRS와 합병하여 Co-operative Group이 되었다. Welcome이라는 편의점 형 점포와 Market Town 이름으로 친숙한 슈퍼마켓을 통하여 점포사업 외에 은행, 보험서비스, 여행, 장례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점포에서 자택으로 배달을 하고 있으며, 와인 위스키 등의 택배도 실시하고 있다. 코퍼라티브 그룹은 영국 생협 전체 매출액의 51%를 차지한다. 다른 생협은 코퍼라티브 그룹과 공동으로 전국생협공동구입기구(CRTD)를 만들어 전국 규모로 식품을 공동 구입하였다.

2001년 말까지 가맹하지 않았던 대형 단협 유나이티드 코프, 사잔코프가 가맹하여 현재 영국 생협은 식품 구입을 100% 공동으로 하고 있다. CRTG 산하 생협은 모두 2,800여개, 매장면적은 102만 평방미터, 단협매출총액은 47억 파운드, 월 내점객수는 5,300만 명으로 전체 협동조합 소매업 시장에서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도 결산보고 자료에 따르면 영국 최대 생협인 코퍼라티브 그룹은 2,800여개의 소매 점포에서 소매를 하고 또 다른 생협과 함께 식품을 중심으로 공동구입하고 다른 생협에 도매하고 있다. 법인회원은 700여개 조직, 개인조합원은 790만 명이다. 코퍼라티브 그룹은 식품소매 이외에 여행 장례서비스사업, 협동조합은행, 법률서비스, 전기, 협동조합보험 등을 포함하여 다면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sup>21)</sup>

## 스웨덴

스웨덴협동조합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커다란 성과를 이룬 시기는 1908~1935년일 것이다. 1937년 당시 스웨덴 인구의 3분의 1이 소비자협동조합 활동가라고 하니, 현재 스웨덴 사회에서 보이지 않은 부분까지 얼마나 협동조합 모세혈관이 흐를지 짐작할 수 있다.<sup>22)</sup>

1992년 연합회 직할 생협과 상위 5개 생협이 합병하여, 현재 이 조직이 전국 생협 사업고의 2/3을 점하고 있다. 식품과 일상생활용품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은

21) 서울지역학교협동조합연수단, 영국 협동조합학교(co-operative school in U.K) 결과 보고서 2015, (서울특별시 2015) pp. 79-81.

22) 아너스 오르네(이수경 옮김),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5)

약 20%이다. 거대화하고 있는 소매점과의 경쟁에서 대항하기 위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생협은 국경을 초월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 프랑스

프랑스의 상업협동조합은 19세기 말 제조업자들의 독점적 횡포 및 소비자협동조합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인한 경쟁에 직면한 식료품점포의 주인들이 공동구매력을 발휘하고자 설립한 것이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상업협동조합은 점포의 독립적 경영주들이 점포의 네트워크를 조직화하는 방식의 하나로 정의되며 독립적 점포의 경영주들의 네트워크는 협동조합 형태 이외에 다른 조직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80%가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상업협동조합은 30개 이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프랑스 소매업 시장의 30% 비중을 차지하면서 총 1,419억 유로(한화 약 170조원)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전체 GDP의 7%를 차지한다.

89개 상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점포는 모두 43,870개이고, 이 점포와 상업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 수는 모두 534,308명에 달한다.<sup>23)</sup>

### 이태리

이태리의 생협은 점포별로 조합원 조직이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과 지역의 문화활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02년 말, 조합원 500만 명, 사업고 약 10조원 규모로 이태리 최대의 소매업으로 생협이 소매업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17%에 달한다. 최근 까르푸 등 해외로부터 거대자본의 침투에 대항하여 사업연합화인 코프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코프브랜드의 강화, 전국 생협의 연대에 의하여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의 운영, 상품화계획의 통일이 개시되었다.

이탈리아 생협의 특징은 유럽의 다른 생협에 비교하여 강한 조합원조직(세츠요네소치)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조합원 조직의 운영은 선거로 선출한 조합원 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교육, 리크리에이션, 문화, 봉사 활동을 한다. 이 조직은 생협의 기초 조직으로 이사 선출의 바탕이 된다.

이탈리아의 생협은 9대 생협이 지역에 밀착하여 중소생협을 지원하는 형태로

23) 프랑스협동조합연수결과 보고서, 프랑스협동조합을 이야기하다, (서울특별시 2015) pp. 10-11.

운영한다. 이탈리아 생협은 주요 업태는 슈퍼마켓(SM)이지만, 하이퍼마켓(HM)의 공급액 비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 하이퍼마켓을 개설하는 등 이탈리아 생협이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다.<sup>24)</sup>

### 스위스

스위스 국민들은 2/3가 2~3개의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협동조합은 익숙하고 편의점, 레스토랑, 은행, 전자제품 판매점, 여행사 심지어 주유소까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영역에 협동조합들이 진출해있다.

협동조합은 스위스 전체 기업 중에서 1%인 3,300개에 지나지 않지만 매출은 스위스 GDP의 11%를 차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그로는 창립자 고틀리에프 두트바일러가 1925년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출발한 사기업에서 1948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미그로는 스위스에서 11번째 규모의 대기업이면서, 50개 기업을 운영하면서 10만 여 명 직원을 고용하는 스위스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기업이다. 스위스 국민의 1/4이 조합원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협동조합이 일상인 나라이다.<sup>25)</sup> Migros는 창설 이래 주류와 담배는 판매하지 않고, 자기 공장에서 엄선한 PB를 생산하며, 매년 6,600만 유로(약 700억 원)를 문화사업에 지출하는 등 스위스 최대의 문화사업 집단이기도 하다. 업태개발 측면에서는 최근, 컨비니언스토어(소형체인매점)의 확대에 힘을 다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 협동조합의 도전 과제는 고물가와 개인 수입의 감소(보험, 세금 등의 비용 상승)로 인해 국경을 넘는 쇼핑투어리즘, 옆 나라 독일의 저가형 매장의 스위스 진출, 온라인 시장의 확장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 일본

일본은 협동조합이 일상화되어 있을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 종교나 정치활동이 아닌 특정비영리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은 50,000개에 이른다. 이 중 일본 대학생협의 역사는 1898년 동지사대학에서 소비조합이 결성된 것에서 시작된다. 그후 동경농대, 게이오대학, 일본여자대학 등에서 소비조합이 만들어졌지만 당시의 소비조합은 대학에서 실험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많았

24) <http://cafe.daum.net/recyclebook/809c/51?q=%C0%CC%C5%C2%B8%AE%20%BB%FD%C7%F9&re=1>

2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coopkorea&logNo=220535836963>

다.26) 현재의 대학생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성 발전한 조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협은 패전 직후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배움은 곧 식량이다’라고 외치던 상황 속에서 대부분 대학의 협력으로 탄생하였다. 식량을 조달하고 학생들의 필수품인 공책을 공급하는 등 대학생협다운 운동이 전개되었고 대학과의 협력관계도 잘 유지되었다.27) 일본의 대학생협은 현재 생협수가 160개를 넘고 조합원 수가 100만 명 정도로 대학생활 전반에 있어서 대학생협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 제4절 선행연구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역사와 이념 배경을 주제로 한 국내의 논문은 몇 편 되지만 대학생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된 논문은 극소수이며 이 또한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있다.

얼마 되지 않지만 협동조합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초창기부터 직접 활동을 한 이미옥(2014)의 논문은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이 태동되었던 1988년부터 연구 조사시기인 2012년까지 25년간의 활동을 각종 문헌을 통해 관찰하였다.

저자는 이를 각각 태동기, 생성기, 발전기, 전환기, 확장기로 명명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다.28)

학생소협들 설립 학생소협 해산, 또는 교수직원 참여조합으로 전환	대학생협을 학생복지기구를 넘어 협동조합 으로 인식 전환	생협법제정 국립대생협 설립증가	경제위기 대학 상업화 대학 생협 위기 역할 재인식	연합회설립 생협법 개정 생협 설립증가	
1988 태동기	1994 생성기	1999 발전기	2008 전환기	2011 확장기	현재

<그림 2-1> 대학생협의 시기별 구분

26) 일본대학생협전국연합회, "협동조합의 이념과 역사" 『대학생협의 이해』 (대학생활협동조합본부 2000) p. 14.

27) 이연숙 역, 『대학생협론』 (대학생협특별위원회 1985), p. 10.

28) 이미옥, 전계논문, p. 13.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역사를 설립주체, 설립동기로 구분하여 연대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대학생협의 연대별 설립특징**

구분	설립주체	설립동기	주요 사항
1980년대 후반 ~ 1993	학생	복지의 질에 대한 불만과 시설운영에 대한 불신	학생소비자협동 조합, 학원자주 화투쟁과정
1994 ~ 1998	교수, 직원, 학생 참여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	
1999 ~ 2007	후생복지 담당 교직원 중심	교육부의 생협 설치 권장	생활협동조합법 제정
2008 ~ 2010		대학의 상업화, 조합원의 중요성과 조합 간 연대의 중요성이 각성됨	대학자율화 정책
2011 ~ 현재		33개 대학생협 활동	대학생활협동조 합 연합회 구성

또한 저자는 대학생협의 설립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생협설립의 주도적 주체와 설립 목적을 기준으로 대학생협들을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설립주체로서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복지향상이 주요 설립 목적이었으며 학생들만의 생협 또는 학생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가 추후에 교수와 직원들이 참여하는 생협으로 전환한 ‘학생생협 전환형’ 대학생활협동조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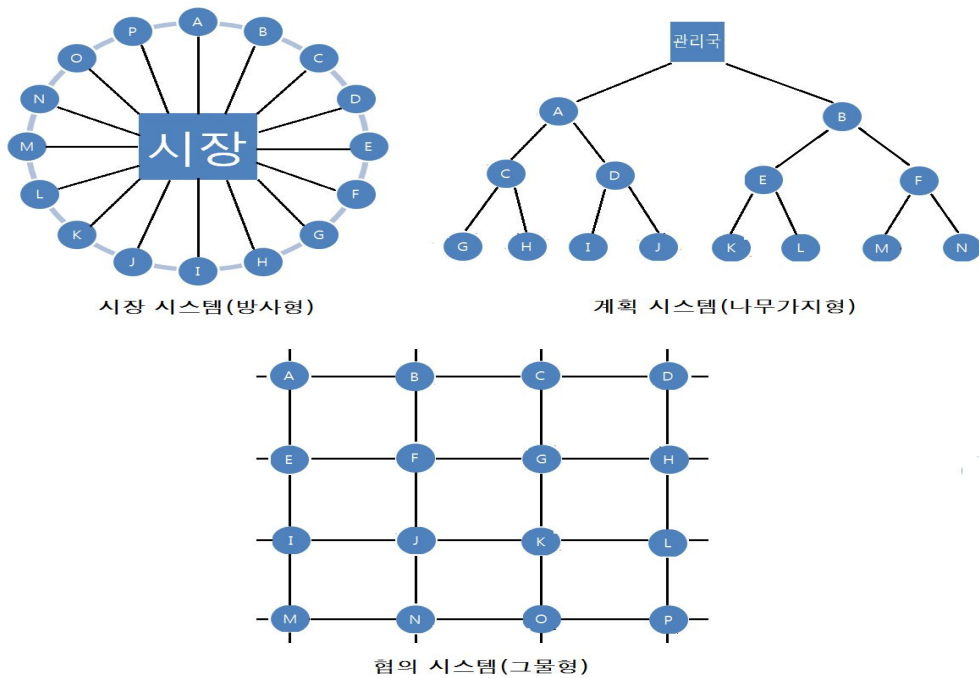
둘째, 교직원이 주요 설립주체로 임의조직인 소비조합에서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후생복지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생협으로 전환한 ‘소비조합 전환형’ 대학생활협동조합이다.

셋째, 어느 한 단위가 먼저 제기하였으나 교수, 직원, 학생 등이 합의에 의해 고른 참여로 법적근거의 필요와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복지향상 모두가 주요 설립 목적이었던 ‘혼합형’ 대학생활협동조합이다.

또 하나의 대학생활협동조합과 관련된 주요 연구는 이규선(2014)의 연구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대학생활협동조합이 대학에서 가지는 역할과 기능을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논자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대학내 사회적 경제구축 (2)학내물가유지 (3)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만족도 상위권 유지 (4)수익금의 대학 내 재투자 (5)캠퍼스 내 사업체와의 협상력 및 통제력 증가 (6)학생들에게 부작기회 제공 (7)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신사업 개발의 7가지 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규선은 대학생활협동조합이 현재 처한 위기상황으로 대학의 상업화에 따른 외부업체와의 대학 내에서의 경쟁심화,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에 따른 시설사용료 부담, 대학에 대한 종속적 관계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순기능을 역설하며 대학생활협동조합의 공공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정부와 대학당국의 대학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둘러싼 사람들의 사회관계를 3가지 모델로 구분하여 파악하면서 협동조합의 시스템을 다른 경제시스템과 구분한 윤형근의 연구(1990)에서는 (1)시장시스템(방사선형) (2)계획시스템(나무가지형) (3)협의시스템(그물형)의 3가지 모델로 경제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sup>29)</sup>



<그림 2-2> 경제 시스템의 기본모델

29) 윤형근 역, 『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도서출판 한살림 1990), p. 113.



이 중 협동조합과 관련된 시스템으로는 세번째 시스템인 협의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효율이나 통합이라는 점에서 시장이나 계획 시스템보다는 열등하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서는 자립한 경제단위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협의 시스템에서는 적절한 인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제 단위가 서로 끈질기게 자주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교섭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의 민주적인 운영원칙을 준수해야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시스템과 일치한다.

최근 사회적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개념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카무라 노부히데(2008)가 제시한 전통적 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비교표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변화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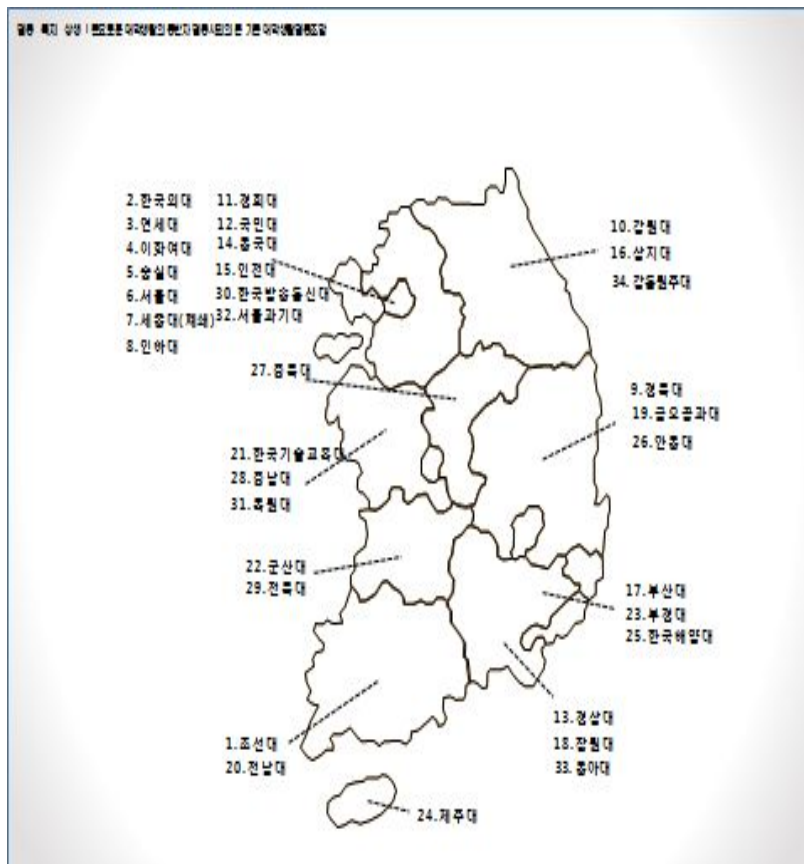
**<표 2-2> 전통적 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비교**

	전통적 협동조합	새로운 협동조합
활동영역	상품의 구매·판매	복지 서비스·지역만들기(공익성)
대상	특정의 개인(한정성)	불특정다수(보편성)
조직의 성격	공익·공조	공익·공조
구성원	단일 이해관계자	다중 이해관계자
사업규모	대규모	소규모
운영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역만들기	비교적 약함	네트워크 연계가 강함

30) 충남발전연구원 옮김, 『생활협동조합과 커뮤니티』 (한울 2014), p. 53.

### 제3장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현황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분포도는 다음의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 약 1/3(12개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21개 대학은 전국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대학교에 생활협동조합이 설치운영 되고 있는 비율은 16%에 불과하여 앞으로 대학 생활협동조합의 지속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 대학생활협동조합 분포도

대학생활협동조합은 2015년 10월 현재 전국에 33개 대학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31개 대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개 대학(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생활협동조합은 법인격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은 5개 대학(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목원대학교)의 생활협동조합이다. 이들 33개 대학생활협동조합 중 자료획득이 불가능한 1개 대학과 2015년도에 설립된 1개 대학(목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의 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고 31개 대학교의 생활협동조합의 2014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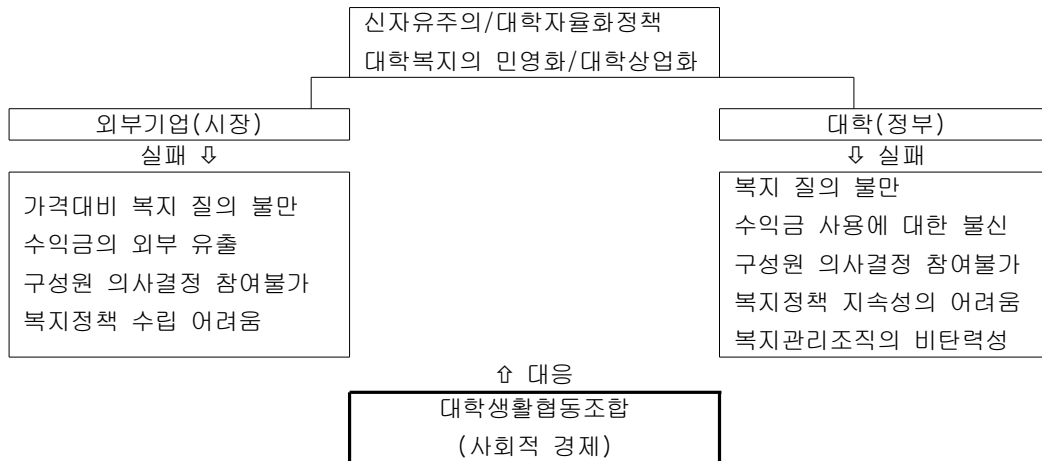
## 제1절 대학복지와 대학생활협동조합

대학사회에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생협이 제기된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이 태동되었던 1980년대 후반의 대학 후생복지시설은 대학에서 직영하거나 외부기업에 임대를 주어 운영되었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문제가 발생되면서 복지를 둘러싼 대학과 구성원간의 갈등은 학원자주화투쟁으로 이어졌다.

외부기업에 임대를 주어 운영하는 경우, 임대업자들의 책임성 결여(창출된 수익금을 들고 야반도주하는 경우), 가격대비 구성원들의 질에 대한 불만, 불만이 있어도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창구가 없다는 것, 수익금의 외부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대학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학생처나 총무처에서 운영관리를 담당하는데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복지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 직원들은 본연의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질의 향상과 수익창출의 어려움, 구성원들의 의견반영구조의 취약 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다가 제기된 것이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경제가 국가와 시장의 실패로 인해 제기되었다고 볼 때, 이에 대학사회의 복지 문제를 국가는 대학으로, 시장은 외부기업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실패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생활협동조합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사회적 경제가 제기된 사회복지의 영역의 모형을 근거로 대학복지의 문제 영역을 모형으로 대입하여 이미옥은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sup>31)</sup>



<그림 4-2> 대학 복지의 문제 영역 설정

## 제2절 협동조합의 관련 법규

협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개별법규와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1> 협동조합의 관련법규

	개별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	생활협동조합법
종류	농업협동조합(1,134개) 수산업협동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교육 및 문화사업
유형	영리 및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31) 이미옥, 전계논문, p. 21.

조합 수	농협 1140 신협 920 수산업 92 중소기업 988 업연초 15 산림 142	7,387개 (사회적협동조합 301개)	480개
회원 수	농협 234만 신협 577만 수산업 159천 중소기업 89만 2천		46만명
출자금	농협 8조 6,750억 수산업 1조 1,580억		
매출액	수산업 1조 4,480억 산림 2,710억		5,300억원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자기자 본의 3배까지	잉여금의 30/100이상 자기자 본의 3배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0이 상 정관에서 정하는 금 액까지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배당가능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조합원에게 분배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규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근거가 되는 개별협동조합법, 5 명이상의 회원으로 자유롭게 설립 운영되는 각종 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협동조합기본법과 비영리법인인 대학생협동조합을 포함한 각종 생활협동조합의 설립근거가 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있다.

### 제3절 협동조합의 관련 회계규정

대학생활협동조합은 25년의 역사 속에서 2015년 10월 현재, 33개의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운영원칙, 즉,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운영 중이나, 대학사회의 변화와 환경과

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대학생활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접근과 설립방법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다양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적으로 관련된 법규에 근거하여 일부 비영리법인의 경우 회계규칙들이 있으나 여전히 통일된 회계처리 방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회계규칙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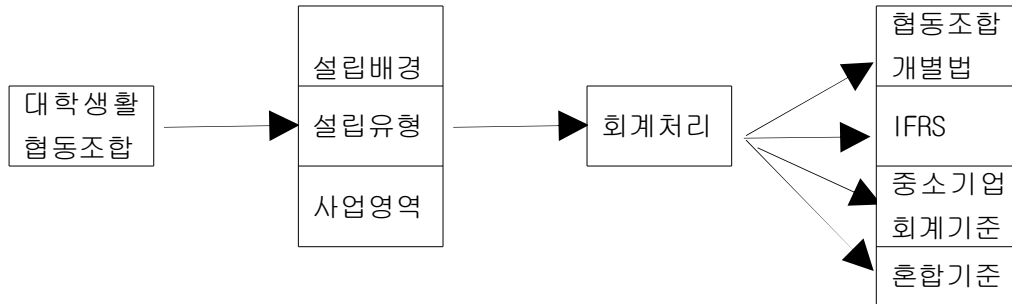
**<표3-2> 비영리법인의 회계규칙**

구분	근거법령	회계기준	비고
학교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복식부기 (유치원은 단식)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국립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복식부기 (유치원은 단식)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단식부기
의료기관	의료법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복식부기
산학협력단	상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복식부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미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단식부기
기부금품모집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공제회(공제조합)	군인공제회법		
정당	정당법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회계처리규정	복식부기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시설회계처리기준	복식부기
기타공익법인(문화예술단체, 학술장학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의 원칙 (구체적 기준은 없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구체적 기준 없음	
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구체적 기준 없음	

## 제4절 연구모형

대학생활협동조합의 구성원인 교수·직원·학생의 3개 주체의 참여와 대학과의 관계, 운영의 자율성 보장, 민주적의사결정구조가 작동되는 정도는 각 대학생활

협동조합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게 하는 작동원리의 정도에 따라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설립배경, 설립유형, 사업영역에 있어서 회계처리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3> 연구모형**

위 그림을 토대로, 대학생활협동조합이 갖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운영효과는 무엇이며, 설립형태에 따른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유형별 운영 특징과 발전을 위해 유형, 설립배경, 사업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5절 표본 및 통계 값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대학생활협동조합 33개 중 자료의 획득이 불가능한 대학 2개 대학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한 31개 대학을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 3-3> 한국의 대학생활협동조합

학교명	설립 년도	회기 말	이사 장	교원 이사	직원 이사	학생 이사	감사	직원 수	조합 원수
강원대	2001	12	겸직	5	3	4	2	32	14239
경북대	2001	12	겸직	5	6	7	2	48	1122
경상대	2004	12	겸직	5	5	6	2	58	427
경희대	2003	12	선출	3	3	7	2	76	9688
국민대	2003	2	선출	5	5	2	3	48	757
군산대	2011	12	겸직	7	5	4	2	8	316
금오공대	2007	12	선출	3	3	3	3	16	539
동국대	2004	2	선출	2	2	6	3	51	2934
동아대	2014	2	선출	4	5	3	2	72	843
방통대	2012	12	겸직	4	4	4	2	10	845
부경대	2011	12	선출	5	4	2	2	29	547
부산대	2006	12	겸직	4	4	6	2	31	593
상지대	2005	12	선출	4	4	4	3	13	5483
서울과기대	2013	12	겸직	4	3	3	2	24	581
서울대	2000	12	겸직	8	3	6	2	368	3641
송실대	1999	12	선출	3	4	4	3	21	5785
안동대	2012	12	겸직	3	3	3	3	29	431
연세대	1994	2	겸직	4	3	6	4		36362
이화여대	1998	2	겸직	4	4	5	2	24	3455
인천대	2005	12	겸직	5	5	5	2	20	12228
인하대	2000	1	선출	4	3	6	2		
전남대	2007	12	겸직	6	4	4	2	19	11379
전북대	2012	12	겸직	6	5	5	2	57	482
제주대	2011	12	겸직	4	4	4	3	23	897
조선대	1990	12	선출	5	5	5	2	22	25427
창원대	2006	12	겸직	3	3	3	2	37	351
충남대	2012	12	겸직	5	5	5	2	38	345
충북대	2012	12	선출	6	4	5	2	40	673
한국외대	1994	12	선출	4	3	3	3	20	2996
한국해양대	2011	12	겸직	3	3	3	2	28	327
한기대	2008	2	겸직	4	4	5	3	47	481



이들 대학생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기술통계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들은 각 대학의 생활협동조합에서 공고한 2014년도 대의원총회 자료집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자료는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표 3-4> 기술통계량**

	대학 수	비12월 회기말	감사2 인초과	이사장 겸직	직원수 mean	직원수 median	조합원 mean	조합원 median
국·공립대	19	0	3	15	48	29	2,630	581
사립대	12	7	7	3	39	36	8,565	3,455

국·공립대 19개 대학과 사립대 12개 대학의 생활협동조합을 표본으로 하였으나 이 중 직원 수와 조합원에 대한 자료는 2개 대학이 누락되어 이를 제외하고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12월이 아닌 회기 말을 사용하는 국립대는 없으며 사립대학에서는 2월을 회기 말로 사용하는 대학이 7개 대학이나 되었다. 국립대는 정부 예산기간인 12월 말에 상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2월을 회기 말로 사용한 7개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은 대학의 학년도 회기 말인 2월에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는 2인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10개 대학의 생활협동조합(국공립 3개, 사립 7개)이 2인을 초과한 감사를 선출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위반한 사항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감사 2인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각 대학의 재무자료는 별도의 표로 제공하지 않고 평균치에 대한 결과만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한다.

<표 3-5> 재무자료 평균치

단위: 개, 백만원, %

	대학수	평균 총 매출액	평균매출 원가율	평균 영업이익	평균영업 이익률	직원 1인 당매출액	직원 1인 당 영업 이익	기부금 / 영업이익
국·공립대	19	6,005	70.8	176	2.3	155	4	0.6
사립대	12	5,921	63.1	-4.4	-1.1	181	-0.7	
전체	31	6,291	68	139	1	164	2.4	0.2

각 대학의 생활협동조합의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원가, 기부금 등과 관련된 평균값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평균 6,291백만 원이며 국·공립대의 생활협동조합이 사립대의 생활협동조합보다 매출이 약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율은 국·공립대의 생활협동조합 오히려 7.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국·공립대의 생활협동조합은 평균 176백만 원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립대의 생활협동조합은 4.4백만 원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립대 생활협동조합중 1개 대학은 설립이 1년 미만으로 초기 손실, 식당운영의 적자를 보전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생활협동조합의 운영방침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직원 1인당 매출액의 규모는 사립대 생활협동조합이 181백만 원으로 국·공립대의 생활협동조합 155백만 원보다 17%가 더 높다. 이것은 사립대의 생활협동조합에서 국·공립대의 생활협동조합보다 평균적으로 인원을 더 적게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 제4장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회계처리 현황 및 문제점

대학생활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영리조직들은 각각 양식과 내용이 다양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비교가능성이 낮다. 이와 같이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가 각각 상이한 것은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계보고서의 명칭도 차이가 있으며 공표되는 회계보고서의 양식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회계보고서에 대한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주체가 각각 상이하며 많은 경우에 비전문가가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조직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표시함에 있어 일관되고 통일된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영리조직에 적합한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재무제표는 비영리조직의 제1요건인 비영리성에 직접 배치되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손익계산서, 사업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같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정체불명의 재무제표가 되기 일쑤였다.<sup>32)</sup>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회계처리의 내용을 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영리조직인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회계처리 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절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채택의 문제

2010년 국가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복식부기를 채택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에서 현금주의가 아닌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관행에서 이루어져 왔던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처리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고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회계처리에서 발생주의 개념 속에서도 현금주의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방식을 볼 수 있다. 2014년도 대학생활협동조합의 결산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예금이자수

32) 배원기, 전계서, p. 142.

입,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정 처리되어져야 할 항목들이 대부분의 대학생협동조합 결산보고서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이는 아직도 회계담당자들이 발생주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현금주의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자격상실(교직원의 퇴직, 학생의 졸업 등) 되면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특성상 교직원의 퇴직과 학생의 졸업자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출자금을 유동부채로 처리하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에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협동조합의 결산보고서에서 이를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는 곳은 1개 대학생협동조합 뿐이다.

자 산 총 계		3,291,890,427		3,091,986,866
I. 유 동 부 채		1,029,992,850		891,195,247
외 상 매 입 금	525,015,201		644,601,311	
지 금 어 음	0		0	
미 지 금 금	251,131,222		1,606,327	
미 지 금 비 용	188,115,070		180,111,710	
선 수 금	1,466,540		14,955,460	
예 수 금	46,136,432		29,675,735	
미지금 법인세	4,352,710		9,170,971	
가 수 금	0		0	
미지금 배당금	9,825,675		6,483,733	
<b>미지금 출자금</b>	<b>3,950,000</b>		<b>4,590,000</b>	
II. 고 정 부 채		846,627,766		869,639,016
퇴직급여충당금	834,000,866		807,012,116	
계약이행 보증금	12,626,900		12,626,900	
장기 차입금	0		50,000,000	
부 채 총 계		1,876,620,616		1,760,834,263

<그림 4-1> 미지금 출자금을 유동부채로 처리한 경우

## 제2절 결산보고서 및 계정과목의 명칭 통일성 결여

생활협동조합법 제48조에서는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 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보고서와 잉여금처리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총회자료집을 분석하여 보면 이에 대해서도 법규에 명시되

어 있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①결산보고서 대신 재무제표라는 용어를 사용
- ②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
- ③손익보고서 대신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라는 용어를 사용
- ④잉여금(손실금)처리안 대신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라는 용어를 사용
- ⑤그 외에도 법률에서 요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다.

용어에 대한 이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대학생활협동조합이 무의식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회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법인이 아니며 대학생활협동조합을 관장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이들 용어의 사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차대조표와 손익보고서라는 용어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으며 재무제표라는 용어대신에 결산보고서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임의로 추가적인 보고서(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보고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자율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들 보고서는 결산보고서의 필수영역이 아닌 별도의 내용으로 분리하여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II. 결산보고

### 재무상태표

제8기 2014. 12. 31 현재  
 제7기 2013.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8 (당) 기		제 7 (전) 기	
	금	액	금	액
자 산				
1. 유동자산		2,152,821,891		1,961,435,325
(1) 당좌자산	1,186,522,159		965,883,683	
매장현금	18,100,000		18,100,000	
보통예금	496,061,131		349,277,897	
정기예금	450,000,000		400,000,000	

<그림 4-2> 회계보고서 표제 예1

## 재 무 제 표

제11(당)기 : 2015년 02월 28일 현재

제10(당)기 : 2014년 02월 28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11(당)기	제 10(전)기
자 산		
I.유동자산	1,427,384,593	1,380,353,794
(1) 당좌자산	557,329,687	439,326,155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202,957,463	91,545,364
2. 단기금융상품(주석3)	234,511,774	260,000,000
3. 매출채권	77,561,080	65,786,272
4. 상품권	3,672,000	460,000

<그림 4-3> 회계보고서 표제 예2

## 2 2014년도 재무제표

### 1. 대 차 대 조 표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당기	전기
	금액	금액
자 산		
I.유 동 자 산	1,599,052,803	1,274,499,152
(1)당 좌 자 산	1,285,849,250	937,244,067
1. 현금및현금등가물	577,640,884	348,521,074

<그림 4-4> 회계보고서 표제 예3

# 손익계산서

제24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23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계정과목	당기(제24기)	전기(제23기)	차액	증감(%)
<b>1. 총공급액</b>	<b>4,822,848,100</b>	<b>4,708,455,501</b>	<b>-80,807,401</b>	<b>-1.7%</b>
(1)과세공급액	2,601,888,531	2,560,183,055	41,705,476	1.6%
(2)면세공급액	2,009,741,170	2,132,823,010	-123,081,840	-5.8%
(3)수익수수료	10,220,012	9,394,551	825,461	8.8%
(4)수수료수익	798,387	1,054,885	-256,498	-24.3%
<b>2. 공급원가</b>	<b>8,582,161,028</b>	<b>8,648,889,777</b>	<b>-86,728,754</b>	<b>-1.8%</b>
(1)기초판매물자재고액	199,433,715	137,824,153	1,809,562	1.3%
(2)기초판매물자재고액	134,070,895	349,584,376	-215,493,481	-61.6%
(3)당기과세구매액	1,824,098,915	1,866,512,120	57,588,795	3.1%
(4)당기면세구매액	1,758,547,107	1,568,893,738	189,653,369	12.1%
(5)기말과세물자재고액	160,035,347	139,433,715	20,601,632	14.8%
(6)기말면세물자재고액	219,954,282	134,070,895	79,883,387	59.6%
<b>3. 총공급이익</b>	<b>1,040,487,077</b>	<b>1,054,565,724</b>	<b>-14,078,647</b>	<b>-1.3%</b>

<그림 4-5> 손익계산서 구성내용 예1

## 2. 손익계산서

제 2 (전) 기 : 2013. 1. 1. ~ 2013. 12. 31.  
제 3 (당) 기 : 2014. 1. 1. ~ 2014. 12. 31.

(단위: 원)

과목	제 3 (당) 기		제 2 (전) 기	
	금	액	금	액
<b>I. 매출액</b>	<b>8,825,498,053</b>		<b>8,405,108,570</b>	
매출액 (매경)	1,889,210,101		1,698,512,885	
매출액 (신당)	1,753,487,500		726,108,300	
매출액 (자판기)	498,119,383		596,889,000	
매출액 (체육사업)	384,021,803		359,850,798	
매출액 (카페)	202,567,878		124,431,102	
매출액 (서점)	819,051,280		0	
매출예누리 (매경)	945,770		483,490	
매출예누리 (카페)	5,800		0	
<b>II. 매출원가</b>	<b>8,808,844,629</b>		<b>2,114,782,053</b>	
기초상품재고액	78,396,867		80,610,783	
당기상품매입액	8,382,717,699		2,112,547,947	
상품매장내부이동	0		0	
기말상품재고액	162,289,727		78,396,867	
<b>III. 매출이익</b>	<b>2,016,651,424</b>		<b>1,290,348,517</b>	

<그림 4-6> 손익계산서 구성내용 예2

손익계산서의 구성 내용도 보면 각각 상이한 계정과목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생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영리기업에서 사용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개념보다는 공급액(공급원가) 또는 사업수익(사업원가)이라는 용어의 선택을 추천하고 싶다.

### 제3절 출자금의 특성

구성원들의 출자로 이루어지는 출자금을 모든 대학생협동조합에서는 자본금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서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원금의 상환을 약속하는 일종의 부채 성격으로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분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법제20조 2항에서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지만 출자금을 자본금의 항목으로 분류하는 논리적 근거로 삼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자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의 부여는 자본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속성과 함께 관례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출자금의 자본금으로의 회계처리 영역은 추후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3)자본		
[1]자본	2,276,374,120	2,017,269,916
(1)자본금	74,380,000	60,710,000
1. 출자금	74,380,000	60,710,000

<그림 4-7> 자본금 구성

### 제4절 임대수입금의 회계처리 문제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모든 매장들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경우 외부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를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시설물의 소유권은 대학법인에 있는 관계로 인하여 세무당국과의 세무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VI . 영 업 외 수 익		491,575,373		506,810,871
이 자 수 익	30,134,382		31,569,709	
배 당 금 수 익	14,388,675		2,526,964	
<b>수 입 임 대 료</b>	173,746,110		172,603,110	

#### <그림 4-8> 수입임대료

대학생활협동조합에서 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므로 탈세의 혐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할 세무서에서는 대학법인에 대하여 대학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외부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에 대하여 대학법인 또는 대학에 대하여 다시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설립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과정에서 대두되었으며 또한 대학의 상업화 바람에 휘말려 많은 대학들이 재정수입의 일환으로 대학 구성원의 후생복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외부업체와 무분별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대학당국이 체결한 외부업체에 대한 과세에 따른 형평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학당국과 대학생활협동조합 간에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외부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형태로 합법적인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의 소득누락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 제5절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문제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누락에 따른 가산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의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제품공급자들에게서 받은 판매장려금과 연합회가 공동구매한 회원조합들에

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차액을 물품판매 수수료나 대가로 보아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VI. 영업외수익		98,632,651		102,973,315
1. 예금이자	11,395,331		6,668,933	
2. 판매장려금	43,025,667		55,821,426	
3. 고정자산처분이익	0		810,500	
4. 잡수익	10,450,009		5,950,253	
5. 수입임대료	33,761,644		33,722,203	

**<그림 4-9> 판매장려금**

회원조합인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물품공급에 있어서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으며 비영리법인의 특성에 맞추어 연합회에서는 공급받은 가액 그대로 회원조합인 각 대학생활협동조합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일부는 연합회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며 나머지는 회원조합인 대학생활협동조합에게 배부한다.

과세관청은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간주하지 않고 연합회가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판매장려금과 회원조합에 배부한 판매장려금의 차액을 물품판매 수수료나 대가로 보아 용역의 공급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통칙 13-48-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내용에 상충 할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적용에 있어 총액인식기준과 순액(수수료)기준을 같이 적용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연합회는 수익의 총액인식에 충족하는 재화의 판매자로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적법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였으며 또 공급자로서 적법하게 재화를 회원조합에게 공급하고 회원조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구매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수취는 적절한 것이며 당초의 물품공급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 제6절 감사 선임의 문제

생협의 활동과 사업은 그 경영성과에 따라 조합원과 관련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생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생협의 조직 상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할 상설 기관인 감사를 두는 것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감사는 상설기관이므로 감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활협동조합도 존립할 수 없게 된다. 감사는 생활협동조합의 경영, 회계, 재산 상황 등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감사가 감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감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동시에 권한이기도 하다.<sup>33)</sup>

감사의 기능이 단지 부정의 사실이나 남의 잘못을 세세히 들추어내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감사의 정상적인 감사활동은 조합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자세를 긴장시키고, 부정·부당한 행위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예방효과가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조합의 경영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소속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sup>34)</sup>

이러한 감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임원) 1항에서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생활협동조합에서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명을 초과한 감사를 선출하고 있다. 3명 또는 4명의 감사를 선임한 대학생활협동조합이 10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감사를 통한 견제기능의 강화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참여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의 3개 단위에 골고루 배부하기 위한 의미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법률에서 2명의 감사로 제한을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2명을 초과한 감사를 선출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33) 장용진, 『생활감사의 이론과 실무』 (생활협동조합중앙회 2000), p. 39.

34) 무지개협동문고 간행위원회, 『농협감사의 길잡이』 (한국협동조합연구소 1997), p. 25.

## 제7절 대학발전기부금의 납입문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각 대학생활협동조합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을 장학금, 시설확장,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학 조합원인 구성원들에 대한 배당금은 미미하며 대부분의 이익잉여금은 대학발전을 위한 형태로 지출되고 있다. 당기수익에서 지출되는 장학금, 발전기부금 등의 항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이익잉여금에서 지출되는 이들 항목에 대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한 선순환체제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의 하나다. 영리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이루어져 취득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상으로 비용 처리되어 절세효과가 나타나지만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대학발전기부금 명목의 이익잉여금 처분의 항목은 소모성 지출로 절세효과를 보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학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비영리성 목적의 수행에 불리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대학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의 증대와 함께 비용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제5장 결론 및 한계점

1989년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건설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한국의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33개 대학에서 생협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대학의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이 설립의 주체가 되고 운영의 주체이며 소비자인 대학생활협동조합은 대학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후생복지의 한 영역을 위임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대학생활협동조합은 구성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방법으로 물품과 재화를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창출된 이익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생활협동조합의 구성원들에게 환원되어 대학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협동, 상생, 복지를 핵심 가치로, 대학에 필요한 서점, 식당, 휴게실, 매장, 문구, 카페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각종 강좌와 문화사업 등 조합원들의 학습을 위한 교육과 대생협을 알리는 홍보활동, 우산 및 운동기구 대여, 연탄과 김장 등 나눔 활동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2014년에는 한국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세계협동조합연맹아시아태평양지역(ICA-AP)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른 나라 조합원들과의 활동 교류 등 국제적 연대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는데 반하여 대학생활협동조합은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실현을 위한 비영리법인이다. 최근 대학가에 불어 닥친 대학의 상업화로 인하여 이러한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원래의 비영리적 특성이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래는 비영리 조직이 열쇠를 쥐는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다. 결국, 이윤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영리기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증가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 등 관료조직에 의한 행정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않는 한편에서,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발적인 협동조직이 주목받게 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참가하는 것에 의하여 자기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현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이들 비영리 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sup>35)</sup>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미래

의 시대를 열어갈 젊은 대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기본인 협동과 상생의 가치 아래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양적 성장과는 달리 관련된 법규와 지침에 따른 통일된 회계처리기준과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각 대학생활협동조합 간의 비교가능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명백한 지침의 결여로 인하여 세무당국과의 과세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 제시된 몇 가지의 회계문제와 더불어 대학생활협동조합에 적절한 회계처리 기준이나 지침에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회계원칙에서 완전한 발생주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미수이자수익, 미지급출자금 등의 계정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져 현금주의가 혼재된 현재의 회계처리방식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회계보고서의 근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sup>35)</sup>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보고서의 용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 대신에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대신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신에 손익보고서로 통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새로운 용어로 대체한다면 적어도 손익계산서라는 용어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합한 용어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설립주체로 조합원들로부터 납입받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에서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하여 회계이론으로 지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출자금에 대한 반환의무 규정을 보완하거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출자금의 양도를 허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부채성격을 가지는 현재의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확립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시설물을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외부업체에 임대하여 수취하는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대학 상업화로 인하여 대학이 직접 외부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실행하려는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의 근본적인 설립취지를 과세당국과 대학집행부에 명확히 인식시키는 노력과 함께 법률개정에 대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 대학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과세감면이 가능할

35) 권영근 옮김, 전계서, p. 160.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활용하여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학생협동조합의 비영리적 성격을 과세당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생협동조합은 근거가 되는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법률개정으로 필요한 내용이 충족되기까지는 현행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감사기능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법률이 허용하는 감사의 수는 2인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이익잉여금처분에서 이루어지는 대학발전기부금이나 장학금 등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세무당국의 대학생협동조합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대학생협동조합에 관련된 자료는 2014년도 각 대학생협동조합의 대의원 총회 자료집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편집과정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임의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예로써 직원의 수는 계약직을 포함한 상근직원의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주어진 자료상 일시작업인원과 상근직원의 개념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성격이 모호한 부분은 상근직원의 숫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부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1년도를 기준으로 한 재무자료는 대학생협동조합의 전반적인 추세분석을 행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 곽창렬, 『소비자협동조합운동』 협동연구원 1989.
- 권수희·이혜라, 『이사를 위한 생협의 조직·경영코스3』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2006.
- 권수희·이혜라, 『이사를 위한 생협의 조직·경영코스4』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2006.
- 권영근 율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안동농업협동조합 2012.
- 김성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대학생협의 이해』 대학생활협동조합본부 2000.
- 김영주·이혜라, 『이사를 위한 생협의 조직·경영코스2』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2006.
- 김형미·김태훈, “차별의 시정과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제도 개선과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2015.
- 무지개협동문고 간행위원회, 『농협감사의 길잡이』 한국협동조합연구소 1997.
- 배원기,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신영사 2013.
- 서울지역학교협동조합연수단, 영국 협동조합학교(co-operative school in U.K)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2015.
-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호, 2008.
- 아너스 오르네(이수경 율김),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5.
- 연합뉴스, 2013. 4. 2.
- 윤형근 역, 『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도서출판 한살림 1990.
- 이문창·박흥석 율김, 『소비자를 위한 생활협동』 에이레네 1992.
- 이미옥, 대학생협의 설립 유형에 따른 사회적 경제 운영 효과 분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언숙 역, 『대학생협론』 대학생협특별위원회 1985.



일본대학생협전국연합회, "협동조합의 이념과 역사" 『대학생협의 이해』 대학 생활협동조합본부 2000.

장용진, 『생협감사의 이론과 실무』 생활협동조합중앙회 2000.

주영덕, 『이사를 위한 생협의 조직·경영코스1』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2006.

충남발전연구원 옮김, 『생활협동조합과 커뮤니티』 한울 2014.

프랑스협동조합연수결과 보고서, 프랑스협동조합을 이야기하다, 서울특별시 2015.

## 대학생활협동조합 총회보고서

강릉원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 보고서, 2015

강원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경북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경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경희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국민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군산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금오공과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동아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1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방송통신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부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부산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상지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2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숭실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15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안동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제16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인천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인하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전남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제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조선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창원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충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6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한국해양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 2015.

## web sit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coopkorea&logNo=220535836963>  
<http://cafe.daum.net/recyclebook/809c/51?q=%C0%CC%C5%C2%B8%AE%20%BB%FD%C7%F9&re=1>  
<http://cafe.daum.net/recyclebook/809c/52?q=%C0%CE%B5%B5%20%BB%FD%C7%F9&re=1>  
<http://ica.coop/en/whats-co-op/co-operative-identity-values-principle>  
<http://kess.kedi.re.kr/index>  
<http://univcoop.or.kr/intro/principle>  
<http://www.fairprice.com.sg/>  
<http://www.moe.go.kr/>  
<http://www.un.org/esa/socdev/social/cooperatives/documents/survey/background.pdf>